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사업인정 승인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의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하오니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4. 27.

영 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3-28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관광지

○ 명칭 :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다. 사업(부지) 면적 : 162,092㎡

라. 사업의 목적 : 국민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해안도로변의 관광개발 가능지를 선정하고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이용 및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광군 관광루트상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특화된 관광거점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성명 : 영광군수

2. 관광지 조성계획 조사

시설지구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62,092	100.00		
공공 시설 용지	공공 편익 시설 지구	소 계	47,970	29.59	
		도로	21,831	13.47	
		주차장	10,183	6.28	
		페스티벌광장	3,918	2.42	
		관리센터	549	0.34	
		화장실(신규)	782	0.48	
		화장실(기존)	614	0.38	
		오수처리시설	1,026	0.63	
		단지외곽도로	9,067	5.59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9,120	5.63	
		노을타운	1,920	1.18	펜션
		노을빌리지	1,440	0.89	독채형빌라
			2,400	1.48	
		3,360	2.07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3,637	2.24	
		노을엘리웨이	2,257	1.39	상가 및 음식점
			900	0.56	
	노을스토어	480	0.30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41,746	25.75	
		노을스퀘어	2,609	1.61	
		포레스트파크	4,971	3.07	
		해안데크로드	3,177	1.96	
		구수산 숲정원	24,059	14.84	
		백수바다정원	5,467	3.37	
노을펫파크		1,463	0.90		
기타 시설 용지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59,619	36.78	
		원형녹지	34,572	21.33	
		조성녹지	25,047	15.4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집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계	132필지				230,183	162,092					
1	백수읍	대신리	665-1	전	453	453	김○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해평길 50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225(대인동)(양산동지점)	근저당권
2	백수읍	대신리	665-2	전	142	142	이○순	법성면 진내리 328			
3	백수읍	대신리	666	전	598	598	김○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해평길 50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225(대인동)(양산동지점)	근저당권
4	백수읍	대신리	667	전	1,104	780	김○복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82 장산타워맨션 102-1401			
5	백수읍	대신리	673	전	347	347	조○희	668			
6	백수읍	대신리	674	전	1,296	628	조○희	668			
7	백수읍	대신리	760-3	임	8,202	2,178	영광군				
8	백수읍	대신리	761	전	724	724	영광군				
9	백수읍	대신리	783-1	임	3,824	3,824	전○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6	전○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42길 51, 401호(한남동)	근저당권
10	백수읍	대신리	783-10	임	1,422	1,422	김○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1 9			
11	백수읍	대신리	783-12	도	3,722	3,722	영광군				
12	백수읍	대신리	783-13	임	1,162	1,162	전○갑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모아타운 102동 1405호			
13	백수읍	대신리	783-14	도	1,493	18	영광군/전○석	인천 계양구 갈현동 46-1	영광군 전○석	인천 계양구 갈현동 46-1	지분2분의1 지분2분의1
14	백수읍	대신리	783-17	도	1,086	1,086	영광군				
15	백수읍	대신리	783-19	목	88	88	영광군				
16	백수읍	대신리	783-2	임	1,358	1,358	서○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흥곡리 338			
17	백수읍	대신리	783-28	임	6,609	6,609	영광군				
18	백수읍	대신리	783-35	도	466	164	영광군				
19	백수읍	대신리	783-4	전	853	853	박○원	84			
20	백수읍	대신리	783-5	목	16,729	16,729	전○갑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모아타운 102동 1405호			
21	백수읍	대신리	783-6	목	165	165	서○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흥곡리 338			
22	백수읍	대신리	783-9	목	221	221	영광군				
23	백수읍	대신리	784	대	1,013	1,013	박○훈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55-1 101동 602호(신풍 이-팰리스)	정주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46-2	근저당권, 지상권
24	백수읍	대신리	785	대	521	521	박○숙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60 101동 2015호(의정부동 동화아파트)			
25	백수읍	대신리	786-1	전	1,101	1,101	박○진	여주시 신기동 138 대립사택 28-506			
26	백수읍	대신리	786-2	대	625	625	이○재	군서면 덕산리 436			
27	백수읍	대신리	786-3	전	1,101	1,101	박○용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373			
28	백수읍	대신리	787	대	942	942	이○재	군서면 덕산리 436			
29	백수읍	대신리	788	전	516	516	이○재	군서면 덕산리 436			
30	백수읍	대신리	789-2	전	152	152	이○재	군서면 덕산리 436			
31	백수읍	대신리	789-3	전	809	809	이○재	군서면 덕산리 436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32	백수읍	대신리	789-4	천	60	60	이○진	785			
33	백수읍	대신리	789-5	도	596	596	영광군				
34	백수읍	대신리	789-6	천	69	69	이○진	785			
35	백수읍	대신리	790	답	429	429	지○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898-4	백수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798	근저당권
36	백수읍	대신리	790-1	도	461	461	영광군				
37	백수읍	대신리	790-2	대	990	990	지○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898-4	백수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798	근저당권
38	백수읍	대신리	790-3	답	382	382	문○현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65번길 4-20(화정동)	정주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46-2	근저당권, 지상권
39	백수읍	대신리	790-4	답	366	366	문○현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65번길 4-20(화정동)	정주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46-2	근저당권, 지상권
40	백수읍	대신리	791	전	555	555	은○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65, 104동 204호			
41	백수읍	대신리	792	전	684	684	정○수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41			
42	백수읍	대신리	792-1	전	483	483	이○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43	백수읍	대신리	793-1	전	1,919	1,919	조○현/김○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6번길 291-1, 10동	조○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6번길 291-1, 10동	지분2분의1
									김○이	경상북도 구미시 흥안로 75, 105동 103호(옥계동, 한마을타운)	지분2분의1
44	백수읍	대신리	793-2	전	1,088	1,088	영광군				
45	백수읍	대신리	793-3	전	712	712	주○순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75	백수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93-3	근저당권, 지상권
46	백수읍	대신리	794-1	임	2,308	2,308	김○선	전라남도 군산시 공항로 95(소룡동)	백양사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2	근저당권, 지상권
47	백수읍	대신리	794-2	전	2,268	2,268	영광군/영광군/이○수/이○연	법성면 입암리 186	영광군		지분4분의2
									이○수	법성면 입암리 186	지분4분의1
									이○연	백수읍 대신리 323	지분4분의1
48	백수읍	대신리	798	전	1,999	1,999	영광군				
49	백수읍	대신리	799-1	전	7,200	4,453	영광군				
50	백수읍	대신리	799-2	전	793	793	은○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소 65, 104동 204호			
51	백수읍	대신리	800-1	전	2,033	2,033	이○재	785			
52	백수읍	대신리	800-2	전	374	374	국(기획재정부)				
53	백수읍	대신리	801-1	임	10,585	3,705	이○재	785			
54	백수읍	대신리	801-2	전	1,412	1,412	이○재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 436	이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근저당권
55	백수읍	대신리	801-3	전	526	526	이○재/김○순/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김○순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이○재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56	백수읍	대신리	801-4	전	271	271	이○재/김○순/ 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김○순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이○재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57	백수읍	대신리	801-5	전	377	377	이○재/김○순/ 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이○재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김○순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이○재	영광읍 백수읍 대신리 785	지분3분의1
58	백수읍	대신리	802	전	823	823	김○명	백수읍 대신리 776			
59	백수읍	대신리	803	전	992	992	전○옥	712			
60	백수읍	대신리	804	답	1,319	1,319	정○덕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409			
61	백수읍	대신리	804-1	전	1,827	1,827	최○술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684			
62	백수읍	대신리	804-2	전	3,565	3,565	표○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27	백수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길3	근저당권
63	백수읍	대신리	804-3	도	149	149	영광군				
64	백수읍	대신리	804-4	도	56	56	전○옥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12			
65	백수읍	대신리	804-6	임	3,277	3,277	최○술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684			
66	백수읍	대신리	804-7	임	549	549	문○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182-11			
67	백수읍	대신리	805	답	152	152	정○덕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409			
68	백수읍	대신리	805-1	도	947	947	영광군				
69	백수읍	대신리	805-2	답	98	98	정○덕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409			
70	백수읍	대신리	806	전	720	720	주○봉/주○호/ 주○봉	전라남도 영광군 범성면 신장리 193	주○봉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193	지분3분의1
									주○호	영광군 범성면 신장리 193-1	지분3분의1
									주○봉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90-5	지분3분의1
71	백수읍	대신리	806-1	도	133	133	영광군				
72	백수읍	대신리	807	답	350	350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73	백수읍	대신리	808-1	답	2,805	2,805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74	백수읍	대신리	808-2	답	60	60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75	백수읍	대신리	808-3	도	2	2	영광군				
76	백수읍	대신리	809	답	105	105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77	백수읍	대신리	809-1	도	57	57	영광군				
78	백수읍	대신리	810	답	20	20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79	백수읍	대신리	810-1	도	750	750	영광군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80	백수읍	대신리	810-2	답	82	82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81	백수읍	대신리	810-3	답	156	156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82	백수읍	대신리	811	전	1,263	1,263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83	백수읍	대신리	811-10	도	168	168	영광군				
84	백수읍	대신리	811-11	도	1,941	1,941	영광군				
85	백수읍	대신리	811-12	전	1,769	1,769	박○회/박○용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장산로2길 53-4	박○회	영광군 백수읍 장산로2길 53-4	지분2분의1
									박○용	영광군 군서면 가남로 114-13	지분2분의1
86	백수읍	대신리	811-13	잡	165	165	영광군				
87	백수읍	대신리	811-14	전	338	338	국(재정경제부)				
88	백수읍	대신리	811-15	전	81	81	국(재정경제부)				
89	백수읍	대신리	811-2	전	1,207	1,207	이○영	전라북도 정읍시 하신경9길 10 404호(상동)			
90	백수읍	대신리	811-3	전	1,101	1,101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91	백수읍	대신리	811-4	전	648	648	임○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 대우아파트 103-304			
92	백수읍	대신리	811-5	전	163	163	영광군				
93	백수읍	대신리	811-6	전	1,864	1,864	정○수	741			
94	백수읍	대신리	811-7	전	1,402	1,402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95	백수읍	대신리	811-8	대	638	638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96	백수읍	대신리	811-9	전	7,329	7,329	박○회/박○용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장산로2길 53-4	박○회	영광군 백수읍 장산로2길 53-4	지분2분의1
									박○용	영광군 군서면 가남로 114-13	지분2분의1
97	백수읍	대신리	812	답	510	510	함양박씨○○○ ○○○종중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98	백수읍	대신리	812-1	도	898	898	영광군				
99	백수읍	대신리	813-1	전	104	104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100	백수읍	대신리	813-10	도	659	11	영광군				
101	백수읍	대신리	813-12	도	482	482	영광군				
102	백수읍	대신리	813-13	전	90	90	국(국토해양부)				
103	백수읍	대신리	813-14	전	28	28	국(국토해양부)				
104	백수읍	대신리	813-4	대	636	636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105	백수읍	대신리	813-5	전	2,096	2,096	오○회/최○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계로137번길 23 에이동210호(연제동 영동맨션)	오○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계로137번길 23 에이동210호(연제동 영동맨션)	지분2096분의 1434.84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오○회 근저당권
									최○주	광주광역시 북구 양양로55, 102동1502호 (연제동,현대아파트)	지분2096분의 661.16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06	백수읍	대신리	813-7	전	1,357	1,357	최○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11-11			
107	백수읍	대신리	813-8	전	98	98	국(기획재정부)				
108	백수읍	대신리	813-9	도	73	73	영광군				
109	백수읍	대신리	814	전	2,798	447	영광군				
110	백수읍	대신리	814-2	도	84	84	영광군				
111	백수읍	대신리	814-3	도	350	350	영광군				
112	백수읍	대신리	815	전	2,520	2,520	영광군				
113	백수읍	대신리	815-1	도	303	303	영광군				
114	백수읍	대신리	818-1	전	198	198	정○옥/곽○자/ 정○오/정○병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5	정○옥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5	지분4분의1
									곽○자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6-17	지분4분의1
									정○오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55	지분4분의1
									정○병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0	지분4분의1
115	백수읍	대신리	818-4	전	99	99	정○옥/곽○자/ 정○오/정○병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5	정○옥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445	지분4분의1
									곽○자	함평군 월야면 문화마을길 6-17	지분4분의1
									정○오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55	지분4분의1
									정○병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0	지분4분의1
116	백수읍	대신리	867	도	4,995	170	국(건설부)				
117	백수읍	대신리	880	도	464	464	국(건설부)				
118	백수읍	대신리	881	천	1,567	1,196	국(건설부)				
119	백수읍	대신리	882	도	218	218	국(건설부)				
120	백수읍	대신리	산182	임	1,289	910	함양박씨○○○ ○○○종중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121	백수읍	대신리	산183	임	18,558	2,006	함양박씨○○○ ○○○종중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122	백수읍	대신리	산184	임	4,371	4,371	영광군/이○재/ 주○광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623	영광군		지분3분의1
									이○재	영광군 백수읍 장산리 623	지분3분의1
									주○광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305	지분3분의1
123	백수읍	대신리	산184-1	도	2,571	2,571	영광군				
124	백수읍	대신리	산185-1	임	546	546	영광군				
125	백수읍	대신리	산185-2	임	276	276	영광군				
126	백수읍	대신리	산185-3	도	1,072	1,072	영광군				
127	백수읍	대신리	산186	임	1,884	1,884	한○이	대진리 210			
128	백수읍	대신리	산187	임	3,967	3,967	이○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785			
129	백수읍	대신리	산188	임	6,942	6,942	함양박씨○○○ ○○○종중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183			
130	백수읍	대신리	산190-1	임	749	749	김○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42			



연 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31	백수읍	대신리	산190-2	임	5,583	5,583	영광군/장○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7길 142-7	영광군		지분3분의2
									장○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7길 142-7	지분3분의1
132	백수읍	대신리	산193	임	24,893	348	조○길	662			

4.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3. 04. 27. ~ 2023. 05. 11. (14일간)

5. 열람 장소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061-350-5758)

6. 기타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 영 광 군 수

#### 1. 조례제명

-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없으나,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지방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제목 변경(안 제9~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으로 조문 재편성
-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추가(안 제9조제2항 신설)
- 당연직 위원에 해양수산과장 추가(안 제10조제2항제1호)

#### 4. 입법예고기간 : 2023. 4. 26.~2023. 5. 16.(20일간)

## 5.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2023년 5월 16일까지 영광군수(참조: 농업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1) 전자우편(이메일): jwook90@korea.kr

2)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농정팀

3) 팩스: 061-350-5599

4) 전화: 061-350-53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농정팀(전화: 061-350-5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 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 농·어업인 정책
4.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 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 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 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 가정행복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 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 뜻은 다음과 -----
1. “농업”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설치)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u>군 계획 및 시행계획</u>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		2. <u>여성 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u>		
		3. <u>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 농·어업인 정책</u>		
		4. <u>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여성 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		

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  
· 가정행복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  
는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 농·어  
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 농·어  
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 제2호에 해당  
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  
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7.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 농·어업인정책 관련 안  
건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 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 가정행복과장,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 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 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 농·어업인 정책
4.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 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 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

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하여야 한다.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2.31 조례 제1963호

(일부개정)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15.0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4.26 조례 제2562호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2725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84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3. “여성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19. 4. 26.)

4. “여성 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5.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2장 시행계획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

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제9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 7. 1.,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농업유통과장·가정행복과장 <개정 2012.12.28, 2015. 1.20, 2015. 7.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 농·어업인 관련시설의 대표자, 여성 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8>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 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 농·어업인 정책
4.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 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 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13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 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

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4조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 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 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 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 농·어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5장 여성 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제16조(여성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 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 농·어업인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8조 (귀농 여성 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① 군수는 귀농 여성 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한 여성 농·어업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

부 칙(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⑨~⑰ 생략

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의견제출서

조례안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